〈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 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 아닌 정보</u> <u>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u>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정 보 공 개 서

티에스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조 제 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 20 . . . **티에스**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20241467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4.11.01.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04.22

〈주 의 사 항〉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 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 므로 귀하의 재정상 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서울시 관악구 호암로 567-1, 101호(신림동)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070-7543-1289				
전화번호	070-7543-1289	FAX	해당없음		



◈ 목 차 ◈

-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별 지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 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 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소					
	찜고집 파스타		서울시 관악구 호암로 567-1, 101호				
בומוג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티에스	개인사업자	2022.02.28. 신보경		경	070-7543-1289		-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203-11-12800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 신보경/ 찜고집 티에스 파스트	771 - 71	서울시 관악구 호암로 567-1, 101호				
대표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신보경	070-7543-1289	_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분	내용	추가설명
명 칭	찜고집 파스타	-
상 호	찜고집 파스타 00점	_
상표 (서비스표)	찜고집	등록번호 : 4020931710000
로고	제고집파스타	-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VAT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 <u>본총</u> 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_	_	_	_	-	_	
2023년	-	-	-	95,609	-	-	
2024년	-	-	-	349,482	-	-	
◈ [별첨] 참조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1) 재무상황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성 지이	사업경력				
선인어구	면여부 이름 현 직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신보경	대표	2022.02.~현재	티에스 대표	업무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1174	임원=	수(명)	지이스 /맵)
시검	상근	비상근	직원수(명)
2024. 12. 31.	1	_	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해당사항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 및 등록일자	출원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찜고집	영업표지 사용 등	출원일자 (2022.02.28.) 등록일자 (2023.10.06.)	출원번호 (4020220039011) 등록번호 (4020931710000)	신보경	2033.10.06.

[◈] 상기 상표권은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서 열람 가능하며, 귀하는 당사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상기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Ⅱ. 가맹본부의 [찜고집 파스타] 가맹사업 현황

1. [찜고집 파스타]의 가맹사업 시작한 날 : 가맹사업 개시 전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23. 8. 18.]

2. [찜고집 파스타]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EINLY	찜고집 파스타 신보경 가맹사업 개시 전		가맹사업 개시 전	서울시 관악구 호암로 567-1,
티에스	검보업 파스디 (선)	연포성	기정사립 계시 선	101호(신림동)

3. [찜고집 파스타] 업종

영업표지	업종				
71 71 71 451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찜고집 파스타	서양식	파스타 등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찜고집 파스타]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시탁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		1	1		1
서울				1		1	1		1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 최근 3년간 [찜고집 파스타] 가맹점 수

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2						
2023						
2024						

6. [찜고집 파스타]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찜고집 파스타**] 이외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의 특수관계인도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2024년 기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단위 : 천원, VAT 미포함)						
지역	2024년 말	연간 평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 가맹점 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8. [찜고집 파스타]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찜고집 파스타]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가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7 8	٨٢١	7171	지출 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VAT 미포함)				
구분	수단	기간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비고		
합계		2024.01.~2024.12.	_	_	_			
71.7	소계	해당없음	_	_	_			
광고	인터넷 등	해당없음	_	_	_			
판촉	소계	해당없음	_	_	_			
世쪽	전단지 등		-	_	-			

11. 가맹금 예치 기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예정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와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주)	
보험계약자	[티에스]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2 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 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찜고집 파스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설비, 오픈행사 등 기타 비용	가맹본부	예치하지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 계	8,250	_	-	-	(예외조건)
가입비	5,500	계약 체결과 동시 지급	영업 개시 이전 계약 해지	가맹 계약을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	
교육비	2,750	계약 체결과 동시 지급	교육 시작 1일 전에 계약 해지	교육에 소요된 실제비용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2) 계약이행보증금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금액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VAT 없음)

구분	금액	지급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 보증금	1,000	계약 체결과 동시 지급	가맹금 미지급, 물품 대금 미지급 등	가맹계약 해지 시 정산 후 반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단위: 천원, VAT 포함)
합 계	9,250
가맹비	5,500
교육비	2,750
계약이행보증금	1,000(부가세 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22,000	2,200	별도기	계약	33㎡(10평)기 준
간판		3,300	-	계약일	제작 전	1면 기준
주방/설비	별첨참조	22,000	_	계약일	주문 전	_
가구/비품		22,000	-	계약일	주문 전	-
POS		1,500	-		별도계약	
최초 공급 상품 비용		3,300	-	계약일	상품 미공급시	_
총계	_	74,100	9,262	_	_	홀매장 기준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동안의 시공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별도비용 : 철거, 온수기, 에어컨, 도시가스 및 LPG가스, 전기(선식변경), 전기증설(승압), 화장실공사, 각종 가구류, 실·내외 사인물, 후드(덕트)입상, 집진기, 소방(전기), 소방(스프링쿨러), 파사드(데크, 폴딩) 등
-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55만원**(3.3㎡당 금액/VAT 포함)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전 3일 이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가맹희망자가 최종 결정)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귀하가 점포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설치장소, 통행인의 수, 지역의 특징, 업종의 특성에 따른 매출 성향 등을 귀하에게 조언할 수 있습니다.

▶ 점포선정 문의처 : 당사 점포개발팀 070-7543-1289

◈ 점포선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입지 선정 시 최종결정은 반드시 가맹희망자가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점포의 하자 및 권리의 하자 등의 사유로 당사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ㆍ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ㆍ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이 아닐 것 미성년자가 아닐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미성년자가 아닐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물품내역	공급방법	공급업체
별첨참조	별도 계약체결	별첨참조

(8) 가맹점 등 분납 제도

당사는 분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 개시 이전 부담하는 최초 가맹금은 전부 일시불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VAT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당사	총 매출액의 5.5%	매월 1일	-	-	_
광고 분담금	당사	상품광고 시 50%	광고비 통지일로부터 2주일 이내	광고 미실시	광고실시 이후	-
판촉 분담금	당사	협의금액	별도 공지	판촉 미실시	판촉실시 이후	_
개점 후 교육훈련비	당사	실비	계약 체결과 동시	교육 미실시	-	교육 필요시 지급 (보수,양수교육)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지정업체 (미정)	실비	-	-	-	-
점포환경 개선 비용	지정업체 (미정)	기맹본부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	-	-	_
지연이자	당사	연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	_	모든 금전 지급기일 경과 시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천 원, VAT 포함)

구분(기준: 2024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_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_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 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이를 미리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3)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려는 경우 부담하여야 할 비용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점고집 파스타]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2개월 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양도 등에 따라 당사에게 초래된 행정적 실비 및 소정의 교육비, 계약이 행보증금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당사에 완전한 계약기간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양수인은 당사와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의 경우 양수인은 당해 가맹 다른 신규 가맹점사업자에 준하는 조건으로 그에 해당하는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계약 기간만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한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① 가맹점사업자와 당사와의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가맹점의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당사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영업비밀, 노하우, 설비 및 당사로부터 지급받은 운영매뉴얼, 규정집, 전단지, POS시스템 등의 사용도 중단하여야 합니다.
- ② 또한, 당사를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간판 등 기타 상징물을 해지일 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철거하여야 하며, 운영매뉴얼 등 당사로부터 취득한 일체의 자료는 당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③ 만일 계약 종료 이후에도 당사를 표시하는 시설물 철거 등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는 직접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철거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에 소요된 시설물 철거비용의 상환을 귀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종료 이후에는 당사에 지급할 물품공급대금, 손해배상금 등 모든 금전채무의 지급의무를 즉시 이행하여야합니다.
- ⑤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⑥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이 영업양수도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해지)된 경우 신규 가맹점사업자에게 인수인계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귀하가 [찜고집 파스타]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품목	규격	거래형태	거래 상대방	비 고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별첨참조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품목	규격	거래상대방 (공급주체)	202 공급가격 상한	3년도 (단위:원) 하한
해당없음				

다)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

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명칭	관계	경제적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매출액)	비고
해당없음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찜고집 파스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①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내 상품 및 용역명 참조]
- ② 귀하가 당사에서 승인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③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3)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내 상품 및 용역명 참조]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 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미성년자	주류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시정요구, 상품공급의 중단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상품·용역은 판매할 수 없음	또는 계약 해지
------	------------------------------------	--------------------	----------

(3) 가맹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맵싹크림파스타	12,000		
여심팡팡 투움바 파스타	11,900		
1+1+1+1+1 파스타 가성비 1인 세트	13,900		
우삼겹 알리올리오 파스타	12,000		
통통 새우 알리올리오 파스타	12,000		
별미 베이컨 까르보나라 파스타	11,900		
생각나는 베이컨 로제 파스타	12,000		
강남 퓨전 라구파스타+함박스테이크	15,000		
(여심저격)새우 로제 파스타	12,000		2024.10.14.기준으
우삼겹 불맛 해장파스타	13,900		로 작성되었으며, 시장 및 경영환경,
얼큰 칼칼 해산물 짬뽕 파스타	13,900	POS, SNS, 공문 등	시
바다향 봉골레 파스타	12,700		권장가격이 증감할
크림 봉골레 파스타	12,900		수 있습니다.
베이컨 토마토 파스타	11,900		
햄폭탄 속풀이 해장 파스타	13,900		
고기듬뿍 해장 파스타	13,900		
김치베이컨필라프+계란후라 이	12,200		
새우 베이컨 필라프후+계란후라이	11,900		
우삼겹필라프+계란후라이	12,200		
새우필라프+계란후라이	11,900		
맵싹크림리조또+계란후라이	12,000		
베이컨 까르보나라	11,900		

리조또+계란후라이	
베이컨 로제 리조또+계란후라이	11,900
새우 로제 리조또+계란후라이	11,900
베이컨 버섯크림	11,900
리조또+계란후라이 참스테이크+감자샐러드+계	11,500
란후라이	16,000
부채살 구운야채스테이크+계란후라 이	16,000
감바스+마늘빵	18,000
구운버터새우+마늘빵(2인세 트)	28,000
나만 몰래 알고싶은 양념 돼지껍데기	13,900
비엔나소세지 4ea	1,000
우삼겹추가 80g	3,300
모닝빵 3ea	2,500
스테이크 추가	5,000
켄터키후랑크 3ea	2,000
분홍햄 5ea	2,000
술먹고 해장 전문 냉면육수 1ea	1,500
고향만두 4ea	1,000
마늘빵 3ea	2,500
버팔로윙 4ea	4,000
버팔로봉 4ea	4,000
버팔로윙/봉 4ea	4,000
치킨가라아게 5ea	4,000
치킨텐더 2ea	3,000
마늘튀김후레이크	1,000
치즈볼 4ea	4,000
밥추가	1,000
면추가	1,000
새송이버섯 추가	1,000

베이컨 추가	1,000
해시브라운 3ea	3,000
왕소세지	2,900
피클	500
계란후라이	1,000
파인애플 쥬스음료	1,000
제주감귤 쥬스음료	1,000
오란씨 파인애플 캔	1,500
뚱캔펩시콜라	2,000
뚱캔사이다	2,000

귀하가 당사의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계약 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이치 어즈 버이	동일한 업종 영업표기		
동일한 업종 범위	가맹본부	계열회사	
찜고집 파스타와 동일한 메뉴를 판매하는 업종	찜고집 파스타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3km	가맹계약서에 표시

- ① 가맹본부는 영업지역을 구분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는 해당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가맹점사업자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 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하며 점 포의 매출액 및 수익은 가맹점사업자의 관리능력이나 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과 점포의 하자, 점 포 개점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 및 상가규약 등의 확인은 가맹점사업자의 책임임을 확약합니다.
- ③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하는 영업지역에 대하여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지도로 표시하여 첨부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배타적 가맹점 운영권을 가집니다.
- ④ 가맹본부는 전항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영업을 실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및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 ⑤ 가맹사업법 제12조의4에 따르는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로는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며, 이 경우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시점에 "을"과 합의하여 영업지역 변경을 할 수 있다.
- ⑥ 해당영업 지역이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시장, 지하상가, 지하철역 사내상가, 종합병원, 공항, 호텔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상권 (이하"특수상권"이라 함)은 제외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점 포가 "특수상권"내에 있는 경우에는, "특수상권"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으로 합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합의를 얻는 방법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합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 영업지역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합의 여부 회신 * 합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재조정 완료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신규 점포 입점 가능)
인정되는 경우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당사는 아래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당사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 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②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③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찜고집 파스타] 영업표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찜고집 파스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 사항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0%	10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점고집 파스타]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시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
①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아니오→A)	D-60일 이건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_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8조
○ [찜고집 파스타]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합의해지, 일반해지, 즉시해지 등 3가지로 사유 및 절

차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의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점 개점 이후,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상호 문서에 의하여 합의 해지 약정을 체결하고 본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의 경우, 당사 또는 귀하는 본 계약의 상대방에게 2개월 전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상호 합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해지가 완료될 때까지는 본 계약에 의한 각자의 권리를 가지며, 각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상호 각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당사 또는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 또는 귀하는 각자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일반해지 사유 및 절차

일반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 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 경매	제28조 제1항
신청된 경우	제1호
○ 가맹점본사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가맹점 본사의 상호 또는	제28조 제1항
상표 아래 가맹점본사의 상품을 가맹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제2호
○ 가맹점사업자가 제3조 제1항(가맹점의 표시)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제28조 제1항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경우	제3호
○ 가맹점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제28조 제1항 제4호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본사에서 실시하는	제28조 제1항
보수교육, 경영지도 등을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이수하지 않는 경우	제5호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치가맹금의 지급에 필요한 증명서류	제28조 제1항
또는 확인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6호
○ 가맹점사업자가 경업을 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직원 등을 통하여 가맹점본사의	제28조 제1항
영업비밀이 타인에게 유출할 우려가 객관적으로 높은 행위를 하는 경우	제7호
○ 가맹점사업자가 물품대금, 로얄티, 광고, 판촉비 등의 대금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거나	제28조 제1항
"을"의 채무가 보증금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제8호
○ 가맹점사업자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2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제28조 제1항 제9호
○ 가맹점사업자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본사의	제28조 제1항
품질관리기준을 2개월에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제10호
○ 가맹점사업자가 노후 된 점포설비의 대하여 정당한 사유에 따른 교체·보수요청에 따르지	제28조 제1항
않는 경우	제11호
○ 가맹점사업자가 제24조 제1항의 규정(감독 및 시정요구권)에 의한 가맹점본사의	제28조 제1항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2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본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상품을 변경·추가하거나 가맹점본사에	제28조 제1항
의해 변경된 상품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3호
○ 가맹점사업자가 제26조(자점매입)규정을 위반하여 자점매입하거나 타 업소에 제공 또는	제28조 제1항
판매하는 경우	제14호
○ 가맹정사업자가 가맹점본사의 정한 매뉴얼 기준에 따른 합리적 관리기준을 계약기간 내	제28조 제1항
2회 이상 위반하거나 당사의 가맹점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제15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본사와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제28조 제1항
경우	제16호
○ 가맹점사업자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제28조 제1항
등 가맹점본사의 가맹점 전체에 대한 이미지 손상행위를 지속할 경우	제17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본사와 협의 없이 점포관리 업무를 5일 이상 방치하거나 영업시간	제28조 제1항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제18호
○ 기타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여 가맹점본사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제28조 제1항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제19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18조 제4항에 해당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지나도	제35조 제3항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제2호
○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가맹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제35조 제3항 제3호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가맹점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제35조 제3항 제4호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5조 제3항 제5호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을 양도하는 경우	제35조 제3항 제6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3) 즉시해지 사유 및 절차

위의 일반해지와 달리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 ①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②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③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④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⑥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⑦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⑧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⑨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가맹계약서 조문
○ 가맹사업법의 개정 또는 요식업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TI 4 4 조
○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제44조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당사에게 2개월 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 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양수인 면담 포함, 약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 =) =1=
○ 양수인은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할 것	통지 → 양도인, 양수인, 당사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약 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가맹사업 팀 070-7543-1289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 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 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와 의무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1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상속인, 당사의 가맹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교육비는 없으나 필수의무 교육 발생 시는 실비
대리행 사	당사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대리행사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대리인 면담 포함, 1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업무위 탁	당사 승인시 가능	_	_	-

가맹점운영권 관련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가맹계약 외 기타 부동산조건 및 권리문제에 대해서는 당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리관련 당사가 승인하는 대리인의 조건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며, 영업 중에는 당사가 지정하는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고, 개점 전 교육비는 귀하 또는 교육을 이수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존속기간 중은 물론이며, 계약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하기 전 까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대한민국]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찜고집 파스타]와 동일 시 될 수 있는 메뉴를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맹점사업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찜고집 파스타와 동일시 될 수 있는 메뉴를 판매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가맹사업팀 070-7543-1289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찜고집 파스타]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0:00~03:00	월 27일 이상	(문의) 가맹사업팀 070-7543-128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팀에 통 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

형태는 귀하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비고
특별한 제한 없음	직접 근무	-

(4) 당사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을 필요 시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찜고집 파스타]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고,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지역광고의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비다 저희	ul ¬
十正		당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비고
광고	상품광고	— 광고비의 50%	나 50% 1광고비의 50%	광고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가맹점 부담액 제시(명세서)	광고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상품광고+ 가맹점모집광고	8±14 30%			사업자의 50% 이상의 동의 시 전체 적용
	가맹점 모집광고	100%	없음		
가	가맹점 개별광고	없 음	100%	_	_
개별 행사	기타 지역광고의 경우 가맹점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임의 시행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의 판촉참여 여부 결정→ 가맹점 부담액 제시(명세서)	-	
판촉 행사	공동판촉 활동	협의	협의 단,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 비용 이나 직접 제공하는 경품, 기념품, 팜플렛, 전단, 카달로그 등 홍보물 등의 비용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균등하게 분담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 시 전체 적용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가맹사업의 일환으로서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설정한 요건과 수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가 지역적으로 시행하는 모든 광고, 선전의 소재와 계획에 대하여 당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당사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이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당사의 영업비밀은 한국특허정보원의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 또는 위약벌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당사와 합의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금삼천만원(₩30,000,000)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며, 이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갖습니다.
-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26조(자점매입금지)를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위약벌로 금오천만원(₩5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3)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가맹계약서 제21조(비밀유지)와 제22조(경업금지)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금일억원(₩10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4)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가맹계약서 제36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당사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위반일로부터 1일당 금오백만원(₩5,000,000)을 당사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5) 양당사자는 가맹계약이 체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교환된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상담, 권고, 협의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 (6) 가맹계약의 체결 이후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 하에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법의 개정 및 요식업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 * 가맹사업의 동일화 및 활성화를 위해 영업방침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7)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 제38조(손해배상 및 위약금)내용에 대한 채권 채무의 관계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비용은 법무비용을 포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8)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비고
합계	_	5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_
가맹금 예치 또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 보험계약 체결	(택1) - 가맹본부 지정은행에 예치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당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 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 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 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 사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당사 부담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변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일체의 변명은 제외) 당사 부담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비용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 (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당사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차	비용부담	비고
당사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당사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당사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실비 부담	(문의)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당사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당사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사업팀 070-7543 -1289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찜고집 파스타]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찜고집 파스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은 당사가 정한 곳에서 개업 전에 소집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관리 운영에 관한 교육 실시, 문제 발생시 수시교육 안내	실습교육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양수 교육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보수 교육	가맹점 운영 정책의 변경, 가맹점 영업 활성화, 가맹점 고객서비스 개선, 가맹점 의견수렴 등	실습교육	필요 시	필요 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찜고집 파스타**]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	5일(이론 1일+실습 4일)	5,000 (1인 기준)	관리 운영에 관한 교육 실시, 문제 발생시 수시교육 안내
양수 교육	5일(이론 1일+실습 4일)	5,000 (1인 기준)	상동
보수 교육	필요 시간	실비	가맹점 운영 정책의 변경, 가맹점 영업 활성화, 가맹점 고객서비스 개선, 가맹점 의견수렴 등

^{*}보수교육의 경우 비용 수취 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됩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귀하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개점을 할 수 없으며, 점포의 관리자로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점 이후 당사가 정하는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기간 만료 후 갱신 거절될 수 있고, 물품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개기	
1	서울	찜고집파스타 직영	서울시 관악구 호암로 567-1, 101호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일)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375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 천원, VAT 미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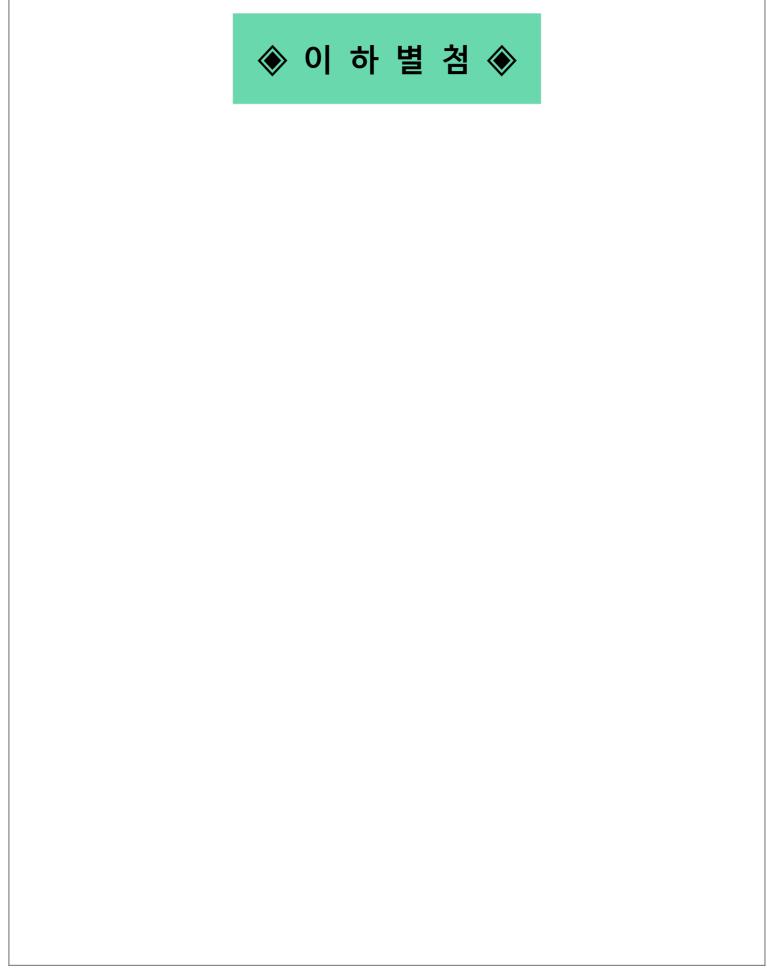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424,240	홈택스 매출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됨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사업팀(070-7543-1289)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 원회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 하십시오. 개별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물품 구입 및 임차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별첨 2] 재무상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별첨 3]

가맹점 순회 점검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4]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직영점 현황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직영점 포함) 10개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 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겠습니다.

구분	점포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비고

정보공개서 수령 확인서

- □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 □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Ⅳ.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찜고집 파스타**]의 정보공 개서를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가맹희망자

성 명: (인)

주 소:

전화번호 :

수령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수령장소 :

* **가맹본부** : 티에스 (인)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

- □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 □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Ⅳ.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찜고집 파스타]**의 정보공 개서를 제공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가맹본부** : 티에스 (인)

제공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제공장소:

* 가맹희망자

성 명: (인)

주 소:

전화번호 :